

의안  
번호

208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영장래 지원 조례(안)

# 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

2023. 11. 21.  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- 가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- 나. 의안번호 : 제208호
- 다. 제출일자 : 2023. 11. 07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11. 14.

2. 제안이유
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 공영장례를 치르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과 사별자의 애도할 권리를 보장하고, 우리구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공영장례 조례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~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)
- 다.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조)
- 라. 지원내용, 지원방법 및 신청과 결정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5조~7조)
- 마.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8조)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입법예고
  - 기 간 : 2023. 09. 27. ~ 2023. 10. 17.
  - 의 견 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□ 개요

- 본 제정안은 가족해체·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한의 장례식을 지원하여 고인의 존엄성 유지 및 사회적 책무 이행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- 보건복지부에 따르면, 무연고 사망자가 2012년 1,025명에서 2021년 3,488명으로 10년간 3배가 넘게 증가하는 등 그 수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, 우리 구의 경우에도 2017년 11명에서 2023년 48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, 특히, 2020년 이후 무연고 사망자 140명 중 101명인 72.1%가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로 경제적인 부담으로 시신 인수 거부·기피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.

### 〈성북구 무연고사망자 현황〉

(2023. 10월 기준)

구 분	2023	2022	2021	2020	2019	2018	2017
계	48	42	32	35	11	5	11
무연고	일 반	9	11	12	11	10	-
	저소득	39	31	20	24	1	-



- 따라서 본 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일 경우 등 공공의 지원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됨.

## □ 주요내용

- 본 제정안은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‘공영장례’, ‘연고자’, ‘무연고자’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, 안 제3조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기반 조성 및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.
-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무연고 사망자, 저소득층 사망자, 고독사로 사망한 자,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 구속·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거나 구청장이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.
-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공영장례 지원의 수준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지원 방법으로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, 예외적으로 현금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,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음.
- 안 제7조는 무연고자 이외의 연고자는 공영장례를 지원받으려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장례계획을 구청장이 확인·조사 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8조는 연고자가 공영장례의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조사·점검과 함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영장례지원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음.

## □ 종합의견

- 이상을 종합해 볼 때, 본 제정안은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<sup>1)</sup> (2023. 3. 29.)으로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된 사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고인의 존엄성 유지 및 사회적 책무 이행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며,
- 특히 무연고 사망자뿐 아니라 보호자의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경우 연고자가 구속·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례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하여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 됨.

**1)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(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)**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 1. 28., 2023. 3. 28.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·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,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「민법」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23. 3. 28.>

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(無緣故 屍身)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,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. 28., 2023. 3. 28.>

④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3. 3. 28.>

⑤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12. 21., 2023. 3. 28.>

⑥ 시장등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<신설 2023. 3. 28.>

□ 타구조례 제정 현황

(2023. 10월 기준)

구분	총계	자치구명
제정완료	6	서울시(2018. 9. 23.), 동작구(2021. 12. 9.), 광진구(2023. 9. 20.), 관악구(2023. 9. 25.), 노원구(2023. 10. 1.), 강북구(2023. 11. 3.)
제정중	8	양천구(의회 가결), 마포구·영등포구·서초구·성동구·구로구·용산구·은평구(입법예고 完)